

대전지방법원 2022. 3. 17 선고 2021가단14226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17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1. 9. 10.부터 2021. 12. 2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21. 2. 24.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21. 4. 9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39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 2. 무변론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- 판사 장재익
- 별지